

민간조사학과 개설의 필요성과 성장방향에 대한 질적 연구

조성구* · 이주락

〈요약〉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의 도입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의 핵심 중 하나가 민간조사원의 교육에 관한 것이다. 민간조사원의 교육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육과는 달리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하게 요구한다. 그러므로 민간조사원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업 관련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이들이 민간조사 교육을 대학교육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탐색적으로 조사한 후 수집된 자료를 질적 자료분석 프로그램인 NVivo 2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민간조사가 필요한 이유로는 국가치안인력의 부족과 경찰이 중요한 사건이 아닐 경우 민원인의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의 신분으로 민사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그리고 민간조사학과 개설 필요성으로는 전문교육기관의 부재와 경찰 또는 의뢰인으로부터의 민간조사에 대한 신뢰성 증대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조사학과의 전망과 진로방향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크게 「공인민간조사업법」안의 통과 전과 통과 후로 나누어 췌다. 법안의 통과 전은 현재와 같이 민간조사와 유사한 보험회사 조사업무, 외국 민간조사업체, 국내 컨설팅 업체, 경호보안업체로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법안이 통과되면 이와 더불어 현재의 경비법인과 같은 민간조사법인이 다수 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여 법안 통과 시 민간조사학과의 활성화될 것이라 판단하였다.

주제어 : 민간조사, 민간조사의 필요성, 민간조사학과 개설, 민간조사학과의 전망,
질적 자료분석

*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박사과정

**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교수 (교신저자)

목 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 방법 IV. 분석결과 및 논의 V. 결론 및 제언 |
|---|

I. 서 론

민간경비(Private Security)는 경찰 등이 담당하는 치안업무를 기업이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치안은 국가와 경찰의 고유영역으로 인식하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민간경비가 단순히 공경찰을 보조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였지만 최근 우리사회에서도 민간경비의 확대경향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985년에는 민간경비 업체의 수가 55개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00년에는 그 수가 1,838개로 급증하였고, 2009년 말 현재 민간경비산업은 업체 수 3,270개, 직원 수 14만 6천명을 넘는 주요산업으로 성장하였다(경찰청, 2010). 이는 1980년대 중반부터 연평균 25%가 넘는 높은 성장으로서, 과거에 부자들이나 소수 특권층에만 머물렀던 민간경비의 혜택이 경제발전으로 인해 일반 국민에게까지 보편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경찰의 치안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현재의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커질 것이고, 또 보다 다양한 민간경비 서비스를 요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주제인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입법화되지는 않았지만,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민간경비의 주요영역으로서 일반화 되어 있다. 그러므로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조사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되어 경찰

이 개입하기 어려운 곳에서 수익자부담의 원칙하에 피의죄인의 재산과 권리의 침해
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의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에서는 ‘탐정’이나 ‘민간조
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특정인의 소재 파악 및 사생활 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많은 유사민간조사업체들이
‘홍신소’나 ‘심부름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공공연하게 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1996년 한국이 OECD회원국으로 가입 후 실질적으로 민
간조사업을 외국시장에 개방하여 많은 외국의 민간조사업체들이 컨설팅회사라는 이
름으로 대기업관련 민간조사업무를 공공연히 수행하고 있다(이주락, 2011). 그러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조사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준
비하여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아야 할 때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의 도입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민간조사원의 교육에 관한 것이다. 민간
조사원의 교육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육과는 달리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하게 요구한다. 그러므로 민간
조사원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올해 5월 국회에서 열린 이인기의원의 민간
조사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민간조사원의 교육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체
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업 관
련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이들이 민간조사 교육을 대학교육에 포함시키는 방안
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려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에 근거한 연구질문(Research Questions)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조사의 필요성 증대의 원인은 무엇인가?
2. 민간조사학과와 개설에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3. 민간조사학과와 전망과 졸업생의 취업전망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민간조사

1) 민간조사의 의의

민간조사란 영어로는 Private Investigation이다. 그런데 Investigation이란 세밀하고 주의 깊은 조사를 통해 증거를 찾아내거나 혹은 어떤 것을 조사하기 위해 증거나 단서를 추적하고 추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간조사원이 수행하게 되는 조사란 범죄의 존재와 특정한 부정행위, 사실여부 확인, 개인의 특성 등을 탐지하기 위하여 프로그램화된 근거에 의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신뢰할 수 있는 증명 혹은 특정 기능이나 활동에 대한 확인 검사라고 할 수 있다(McCrie, 2001).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분류한 소득표준을 분류코드(코드번호 749200)에서도 민간조사란 “개인 및 재산을 위한 탐지, 감시, 보호 등과 지문채취, 거짓말탐지 및 화재예방 상담, 필체 감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간조사는 공권력이 개입할 수 없는 곳에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민간조사원에 사건을 의뢰하여 그 침해를 구제하며, 이를 향후 수사기관에 그 증거자료 등으로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여 경찰청 활동의 간극을 메울 수 있다(조현빈, 2006; 황정익, 2005; 정일석·박준석·오세광, 2008).

2) 민간조사 시장의 현황과 도입

범죄혐의가 불투명한 실종, 미아, 가출인에 대한 수색 등 경찰이 개입할 개연성이 약한 모든 경우에 한정된 인력과 예산의 공공 치안서비스를 투입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법제도가 고도화되면서 늘어나는 법적·기술적 허점을 악용한 범죄나 법적 분쟁에 대해 국가기관이 기초 사실조사나 자료 수집을 대행해 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이인기, 2008). 그러므로 이러한 틈새시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조사업이 행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상주 주재원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외국 민간조사업체는 10여 개 사 300여명의 수준으로 민간조사원이라는 명칭 대신 ‘컨설팅’ 등의 명칭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강영숙, 2008). 예를 들어 다국적 리스크 컨설팅 업체를 표방하는 크롤(Kroll)은 전 세계 33개국 65개 도시에 사무소를 두고 4,200여명의 직원을

운용하며 약 9,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한국에도 지사를 두고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이영래, 2009). 따라서 경영 및 산업보안 등 컨설팅의 명목으로 국내에 진출한 세계의 다국적 유명 민간조사업체의 성장은 국내 민간조사시장의 선점과 함께 향후 민간조사시장에서의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국내 민간조사제도의 합법화는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¹⁾

컨설팅 회사로 활동하는 외국계 민간조사업체와는 달리 국내의 민간조사업체들은 주로 흥신소, 심부름센터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인민간조사법안」이 국회에 심의 중으로 합법적으로 등록된 민간조사업체는 존재하지 않고, 심지어 일부 민간경비업체에서 민간조사업무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민간조사업 관련자들은 국내에 민간조사 관련 업무를 하는 업체가 최소 수백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에 달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사실은 범죄와 사건사고로 많은 시민과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나 범죄의 특수한 성격, 범죄의 전문화, 인력과 예산의 한계 등으로 경찰과 같은 공경비 기관이 사건을 제때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전대양, 2006).

2. 민간조사 교육현황

1) 민간조사를 교육하는 단체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설단체 두 곳에서 교육생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민간조사원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다. 이들 단체에서는 그들의 영리적 목적의 교육을 국회에서 심의중인 「공인민간조사법안」 추진에 대비하여 실시하는 최고위 자격취득과정이라 홍보하며 지정연수원으로 대학²⁾과 연계하여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다음 <표 1>

1)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경호업체나 민간경비업과 관련된 몇몇 주요 업체들을 제외하면 아직도 대부분의 업체들이 매우 영세한 실정이다. 이들은 인터넷이나 지역생활정보지 등을 대상으로 선전하면서 실상을 불문조사, 채권확보, 신상정보유출, 도청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으로부터 거액을 약속받는다면 청부살해나 납치마저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이영래, 2009).

2)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 대구산업정보대학 / 경기대사회교육원 / 성화대학 / 동의대학교 사회교육원 / 조선대학교 사회교육원

은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민간조사를 교육하는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의 PIA 최고위(CEO)과정으로, 교육기간은 10주로 주말을 이용한 100시간의 교육과정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정은 국민의 인권과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간조사원 교육의 중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짧게 구성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다른 P이라는 단체 또한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의 교육과정과 그 운영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다.

〈표 1〉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PIA최고위(CEO)과정 교육과정

	금요일 19:00~22:00	토요일 10:00~13:00	토요일 14:00~17:00
1주	입 교 식 (17:00)	PIA정보 및 공작	기업조사 및 채권추심
2주	필적, 문서 위·변조감정	민간조사업 관련법	민간조사학 개론
3주	과학수사	사이버 범죄조사	지적재산권조사
4주	직업윤리,인성교육	형사법	도·감청 탐색
5주	부동산 리스크조사	보험 범죄조사	민간조사심리학 상담기법
6주	청와대 및 국정원 방문 견학 현장 교육		
7주	교통사고조사	기업 보안 민간조사실무	감시·추적·미행 현장 실습
8주	미아·가출인 소재파악	PIA 체포호신술 (합기도,특공무술)	PIA 자격훈련 태능실탄사격장
9주	민간조사, 경호벤처, 창업실무	지문채취·장비교육 국가포상제도	PIA 자격 시험 평가
10주	수료식		M, T

출처: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www.kspia.kr (2011.7.7 검색)

2) 민간조사학 교과목 개설 대학

현재 경호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에서는 민간조사학을 교과과정에 포함시키기 시작하였다. <표 2>에서와 같이 전국 2년제 이상 경호학과를 가진 정규대학에서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교과목 설치현황을 파악 가능한 52개의 대학 중 민간조사 과목을 설치한 대학은 11개로 전체의 약 25%정도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경호 관련학과에서는 민간조사학을 1~2개의 과목만으로 편성하고 있어, 민간조사가 요구하는 다양한 지식을 교육하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표 2〉 민간조사학을 교육하고 있는 경호 관련 학과의 분포

민간조사과목 설치 대학(11)		민간조사과목 미설치 대학(41)					
경남대학교	법정대학 경호비서학부	경기대학교	체육대학 경호보안학과	경남정보대학	경찰경호행정과	서해대학	경찰경호과
경동대학교	경호학과	경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태권도경호학과	경산1대학	경호무도학부	제주관광대학	관광레저스포츠 계열경호전공
경운대학교	경호학부	남부대학교	예체능계열 태권도경호학과	구미1대학	경호스포츠과	세경대학	경찰경호과
동서대학교	레포츠과학부 경호전공	대구예술 대학교	체육계열 경호보안학과	국제대학	경찰경호전공	송호대학	생활체육과경찰 경호무도전공
용인대학교	무도대학 경호학과	대전대학교	체육학부 경호무도 지도학과	대경대학	경호보안과	안산공과대학	경찰경호행정과
경북전문대학	경찰경호행정 계열	신문대학교	무도경찰경호학부 경찰경호무도전공	대구미래대	공무원사관양성 계열경찰경호 전공	영남외국어 대학	경찰경호행정과
대구과학대학	경호무도과	우석대학교	체육과학대학 경호비서학과	동강대학	경찰경호학부	영남이공대학	경찰경호계열경찰 경호전공
성화대학	부서관경호무도 전공	중부대학교	경찰경호대학 경찰경호학과	동부산대학	경호스포츠과	오산대학	경찰경호행정과
안동과학대학	경호경찰과	초당대학교	예체능계열 경호비서학과	동우대학	경찰경호 무도학부	전남도립대학	경찰경호과
여주대학	경찰경호과	한서대학교	이학부 경호비서학과	동의과학대학	경찰경호행정계열 경호보안전공	전주기전대학	경찰경호과
원광보건대학	경호스포츠과	호남대학교	보건과학대학 태권도경호학과	백석문화대학	경찰경호학부	주성대학	경호무도과
		호서대학교	예체능대학 경호학과	부산정보대학	경찰경호계열 경호보안전공	청암대학	경찰경호과
		한국체육 대학교	스포츠건강 복지학부 안전관리 전공	상지영서대학	경찰경호과	전남과학대	무도경호과
		가톨릭 상지대학	경찰경호 태권도행정과	서라벌대학	경찰경호행정과		
교과목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대학(7)							
대불대학	체육계열 경호무도학부	한중대학교	무술경호학부 무술경호전공	호원대학교	무도경호학부 무도경호전공	김천과학대학	경호무도과
동서울대학	스포츠학부 경호스포츠전공	부산경상대학	경찰경호행정과	포항대학	경찰경호행정과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알리미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011.7.4 검색).

3. 선행연구 검토

민간조사에 대한 학술연구는 지금까지 많이 수행되지 않았고 수행된 연구도 거의 전부가 민간조사 도입의 필요성과 문제점 그리고 입법화 방안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의 예외로서 이상원(2008)은 민간조사제도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외국의 민간조사 교육훈련제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민간조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하다는 점을 발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상원(2008)의 연구도 민간조사원의 교육훈련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자격, 시험제도 등과 더불어 현장인력 중심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을 여러 발전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하였을 뿐이므로 민간조사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의 필요성과 민간조사학과의 전망과 진로방향을 민간조사관련 현장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연구 하려 시도하였다. 다음 <표 3>은 민간조사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와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표 3> 민간조사와 관련된 선행연구

연구자	주요내용
전대양(2006)	이상배 의원과 최재천 의원의 국회 발의안을 분석하여 민간조사원의 자격시험과 감독기관에 대하여 논의
유재두(2007)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전공자들에게도 일정한 시험과목의 면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
이상원(2007)	민간조사원들의 윤리성이 강화될 때 고객들의 신뢰가 있게 되고 나아가서 민간조사산업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고 주장
김원중(2007)	국가치안을 경찰 뿐 아니라 민간조사제도를 통하여 인원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치안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
정일석, 박준석, 오세광(2008)	탐정이란 용어보다 민간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계하여야 한다고 주장. 그리고 민간조사원의 선발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며 민간조사업의 관리 감독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하여 경찰청 소속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
이상원(2008)	민간조사제도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외국의 민간조사 교육훈련제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민간조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자격, 시험제도, 현장교육훈련 중심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민간조사원 교육훈련기관 지정요건의 엄격한 적용, 사후 평가 및 감독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준비와 그에 대한 관리감독이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 이상원은

	민간조사원의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조사의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함. 그러나 민간조사원 교육이 현재의 민간경비원의 신입교육과 보수교육과 같이 현장인력 교육을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
정석현, 송병호 (2008)	민간조사원 교육훈련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교수진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
이승주(2008)	민간조사제도를 합법화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민간조사업법(안)을 제정 시행되어야 되어야 한다고 주장
이승철(2008)	민간조사의 주체를 경비업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하여 공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
이영래(2009)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으로 선진국 사례 소개와 우리나라 민간조사제도 입법화를 논의
정일석, 박지영 (2009)	민간조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기관으로 경찰청 산하 독립적 기구 설치를 주장

Ⅲ. 연구 방법

1. 질적 연구방법

현재까지 민간조사학과 개설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므로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본 연구와 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주제에 대하여 탐색적 접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적 연구방법이 양적 연구방법에 비하여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연구 이전에 연구 설계가 완전히 결정되는 양적 연구와 달리 질적 연구는 진행되는 과정 중에도 연구 작업에 대한 사항들이 구체화되고 수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김영천, 2007).

본 연구에서는 비구조화된 심층면담(Unstructured 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이는 탐색적 접근이라는 특성상 면담 중 연구자가 기대하지 못하였던 내용의 발견을 위하여 일반적인 심층 면담과 비교하여 연구 참여자와 보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민간조사에 관한 다양한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자료 분석

본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컴퓨터를 활용한 질적 분석연구라는 것이다.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를 NVivo 2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질적 자료 분석은 자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의 절약, 자료를 조직하고 구조화하는 체계 제공 등을 통해 질적 분석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료와의 조화로운 거리감, 자료 분석의 정교성, 분석과정의 신축성 및 수정가능성, 자료의 통합성, 자료에 대한 통찰성 및 감사가능성(Auditability)의 향상, 그리고 자료 전파 및 분석과정의 공유 등을 통해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다(최명민 외, 2005). 또한 최근에는 연구자가 지정한 범주가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연구 참여자가 아닌 객관적인 지표로 검증하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NVivo 2에서는 프로그램 내에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장점도 있다(박종원, 2009: 101).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분석이 근거자료 확보의 엄정성을 확보해 준다고 하더라도 범주는 결국 연구자의 판단에 의거하여 형성된다. NVivo 2 프로그램은 근거이론에 기반을 두고 개발된 프로그램으로서,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내용에 의해 데이터의 범주화와 조직화가 효율적이고 자료와 색인체계 및 이론적 작업 기능을 갖추고 있다.

본 연구는 인터뷰의 전사 작업을 마친 후 이 프로그램의 분석단계에 따라 프로젝트를 만들고 전사된 녹취록을 프로그램 안에서 불러들여 자료를 읽어가며 의미 있는 단어나 구, 문장, 문단 또는 아이디어를 노드(Node)⁴⁾로 범주화하였다. 데이터를 분석하며 기존 노드에 해당되는 자료는 기존 노드로 범주화하였으며 데이터에 적합한 노드가 없으면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 데이터를 범주화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연구결과는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범주화에 대한 확인은 연구 참여자 선정에 참여했던 전문가들⁵⁾의 재검토하는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 분석과정에서 변경이 필요한 것은 수정하였고 메모가

3) Nvivo2가 근거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의미는 연구자의 관점이 아닌 최대한 원자료에 의해 실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도록 원자료로부터 상위범주로 가는 오픈코딩의 기제를 정교화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특정 학자에 의해 개발된 근거이론의 일정한 방식에 의거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최명민 외, 2006).

4) 노드는 아이디어나 범주를 저장하는 공간으로서 Nvivo 2에서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언제나라도 만들거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저장하는 것이 자유롭다. 노드에는 어느 곳에도 분류되지 않는 생각을 모아두는 자유노드, 도서관목록처럼 범주와 하위범주를 접근이 용이하게 분류하는 트리(tree)노드, 그리고 각 사례에 관한 자료를 저장해 두는 사례노드 및 사례유형노드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최명민 외, 2006).

5) 자문회의 전문가는 민간조사관련 분야에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을 5명으로 하였고 자문회의는 2차까지 진행하였으며 이 회의를 통해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내용을 메모기능을 활용하여 메모로 저장하였다. 그리고 하위노드(Child node)와 상위노드(Parent node)를 단계적으로 형성해 감으로써 노드들 간의 관계를 구조화해갔으며 하위범주에서부터 상위범주까지의 관계를 분석하고 데이터 구조를 다듬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3. 연구 참여자

이 연구의 참여자는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에 의해 선정하였다. 이는 질적 연구의 표집방법 중 하나로서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풍부하고도 심도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Padgett, 2001). 따라서 민간조사학과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풍부하고 깊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서 실무를 경험해 본 민간조사 종사자를 표집기준으로 정하였다. 여기에서 충분한 실무경력으로 선정한 기준은 경력 5년 이상이었다. 이는 관련 전문가와의 자문회의를 통해 민간조사 관련분야에 대한 통찰력을 갖추는데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의 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6월 까지 약 7개월간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사경찰관, 민간조사업체 경영자, 민간조사 실무자와 보험회사에서 조사업무를 하고 있는 현장 종사자들을 면담하였다.

자료수집에 들어가기에 앞서 연구자는 민간조사 관련 종사자들의 현장과 관련된 자기이해를 위해 민간조사학과 개설의 필요성과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및 자기경험을 기술하고 공유하며 상호 분석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선입견이나 편견이 면담과 연구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인터뷰는 1:1 면담으로 진행하였으며 시간제한을 두지 않아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였다.

연구의 포화는 연구자를 중심에 두고, 연구자가 자료에 대한 완전한 포화도(Saturation)의 이해를 얻을 때까지 연구대상과 면담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략 15-16회 째의 면담에서부터 새로운 질문이 다음 면담에 추가되지 않았고 면담질문에 대한 답변들도 반복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면담을 통해 연구문제에 답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연구 참여자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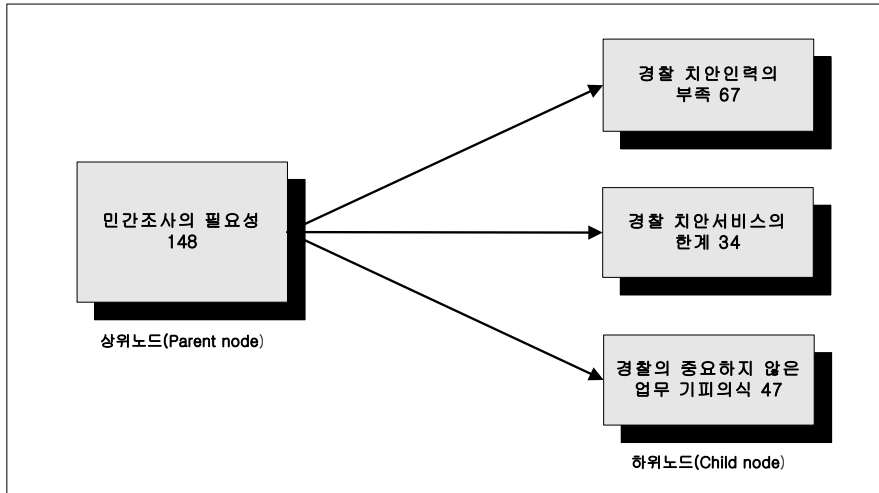
직종	수사경찰관	민간조사업체 경영	민간조사원	보험사기조사원
참가인원	7명	6명	6명	5명
남/여	6/1	4/2	6/0	5/0
경력	10-5년	12-6년	12-7년	13-8년
연령	41-36세	39-28세	38-31세	40-34세
학력	석사·학사	석사재학·학사	학사·전문학사	석사·학사

연구 참여자는 총 24명으로 남성이 21명 여성이 3명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들의 직종은 수사경찰관 7명, 민간조사업체 경영자 6명, 민간조사원 6명, 보험사기조사원 5명으로 구성되었다. 업무경력은 최소 5년에서 최대 13년까지였고 전체평균은 11년으로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학력은 석사에서 전문학사까지로 다양하였다.

IV. 분석결과 및 논의

1. 민간조사의 필요성

민간조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대체로 경찰 치안인력의 부족, 경찰 치안서비스의 한계, 경찰의 중요하지 않은 업무 기피의식 때문이라 하였다. <그림 1>은 민간조사의 필요성을 범주화한 하위노드와 상위노드의 코딩 빈도와 속성의 관계를 구조화한 모형이며, 그 다음은 민간조사의 필요성에 응답한 연구 참여자의 대표적인 하위노드(Child node) 면담내용이다.



〈그림 1〉 민간조사의 필요성 요인

- 우리 진짜 신고가 밀리는데 그거 솔직히 우리 민간인한테 우리 지금 바쁘니까 지금 가야돼요 못하고 그렇다고 나올 때까지 계속 쳐다보고 있을 수도 없고 내가 봤을 때는 범퍼가 그렇게 망가진 건 아니거든요. 별로 안 망가 졌는데 솔직히 그냥 보험처리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이 있는 건 맞거든요. (D-45)⁶⁾
- 얼마 전에 어떤 의뢰인이 경찰서에 갔더니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G-32)
- 민간조사 있으면 좋지요. 사실 우리 만날 피곤하고 아주 죽겠어요. (Q-12)
- 우리 경찰이 실적위주로 평가를 받으니까 아무래도 성과 위주로 일을 하게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실적 아니겠어요? (P-9)
- 미아 찾기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미아하면서 인터넷에 빨리 띄우죠. 엔바고하고 그 다음 찾으러 가야죠. 탐문수사하고 납치의 가능성은 없는지 그런 것도 보고 그 일대의 CCTV도 보죠. 얘기 있는지 없는지 어디로 갔는지 친구들의 마지막 본사람 누가 데리고 갔는지 항상 초등학교 근처 문방구에 자주 가는 곳이 있던 말이죠. 그래서 거기 주인이 얘기를 잘 알아요. 그래서 애 오늘 왔었냐? 학원차 탔냐? 학원 기사 생하고 통화하고 그런 거 있고 조사하면 나오죠. 경우마다 다르긴 한데 만약에 100개가 있으면 그 중에 80개는 친구 집 놀러가거나 그런 거고 납치는 진짜 거의 드문 경우고 잃어버린 경우는 거의 잘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친구 집 놀러간 경우인데 학원 땀땀이치고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진짜 중요한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마다 민간조사 그거 진짜 생각나더라고요. (C-2)

6) (D-45)에서 D는 연구 참여자의 코딩 부호이고 45는 연구 참여자가 언급한 질적 자료의 노드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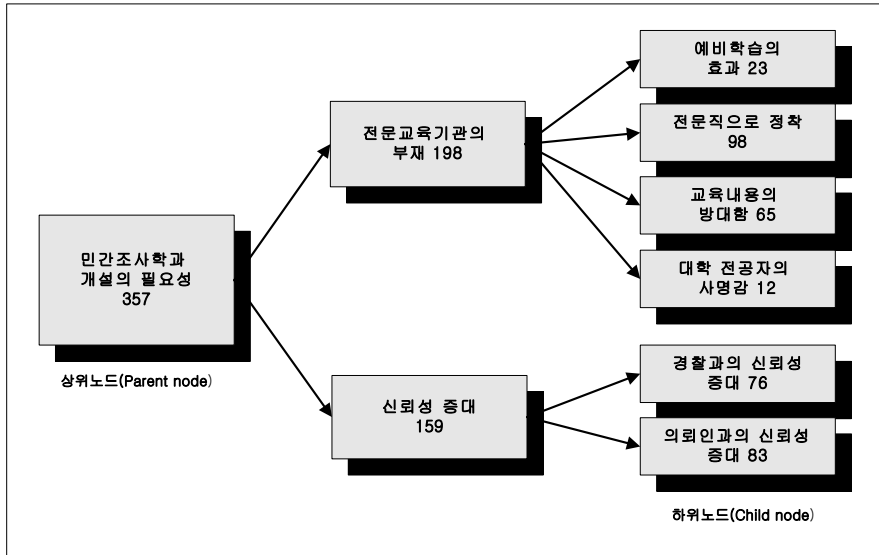
민간조사의 필요성은 코딩된 노드의 수로 보았을 때 국가치안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찰이 중요한 형사사건이 아닐 경우 민원인의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과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의 신분으로 민사 사건과 관련된 민원인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민간조사의 필요성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최근 치안여건의 변화로서 국가 경제규모의 확대로 다양한 형태의 금융관련 범죄의 증가, 성범죄와 같은 사회적 약자피해의 증가, 개인과 개인의 상호 채권채무관계로 재산범죄 증가, 의료사고와 같은 전문지식 필요사건의 증가, 법정증언 자료의 확인 및 재판관련 서비스 제공, 민간조사의 수사기관과의 공조, 미아·가출인·실종자처리, 개인 및 법인에 관한 조사⁷⁾ 등 국가경찰이 만족시킬 수 없는 범죄피해의 유형이 급증하고 있어 민간조사의 필요성은 더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2. 민간조사학과 개설의 필요성

민간조사학과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크게 전문교육기관의 부재와 민간조사원의 신뢰성 증대로 나누어 졌다. <그림 2>는 민간조사학과 개설의 필요성을 범주화한 하위노드와 상위노드의 코딩 빈도와 속성의 관계를 구조화한 모형이며, 그 다음은 민간조사학과 개설의 필요성에 응답한 연구 참여자의 대표적인 하위노드 면담내용이다.

7) 직업 채용 시 범죄경력조사 · 직원의 행동조사 · 거래처의 신용 및 재무 상태조사 · 산업스파이조사 · 특허권침해 · 개인의 결혼 및 이혼 · 스토킨조사 등



〈그림 2〉 민간조사학과 개설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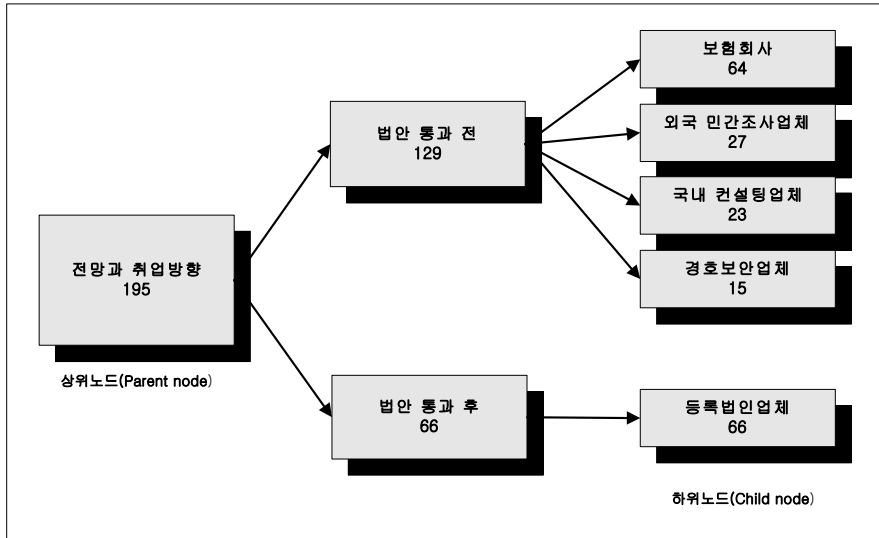
- 그거 나도 뭐 전문적으로 어디서 배운 게 아닌데 가르치려면 머리 아프지. 뭐 좀 배워볼라고 해도 협회 이한테 가봐야 그거 뻔하고.(B-44)
- 민간조사 같은 것이 너무 난립하고 있으니까 저는 경찰행정학과 출신인데 민간조사 이거도 민간조사학과 이런 식으로 학과 만들어서 전문 인력 만들어내면 우리도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요?(M-40)
- 의뢰인들이 우리 출신에 대해서 좀 못미더워 하시는 것 같아요. 민간조사학과에서 전문 민간 조사원 길러내면 일단 졸업장 자체가 보여주는 게 있으니까 도움도 될 것 같아요.(A-22)
- 무엇보다도 정규대학에서 교육과정을 거쳤다면 우리 경찰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민간조사원이 조사해서 해결이 안 됐다고 하면 우리가 나서서 수사 진행을 할 수 있죠.(R-189)
- 그리고 경찰생활 해보니까 일반 학과출신이 경찰하는 거하고 대학에서 전공으로 했던 사람이 경찰하는 거하고 마인드 자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A-22)
- 교육을 좀 받아서 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M-21)
- 젊고 유능한 인력을 요즘 대학교 같은 곳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전문 인력이고 그래야 전문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F-122)
-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가면 취직해서도 훨 낫겠지요. 회사의 스타일만 자기에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E-71)

이처럼 민간조사학과 개설의 필요성은 전문교육기관의 부재와 경찰 또는 의뢰인과의 신뢰성 증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교육기관의 부재는 전문직으로의 정착과 교육내용의 방대함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대학에 전공학과를 개설하여 전문 인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민간조사원의 경우 전문성과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민간조사원에 대한교육은 어떤 다른 직업교육보다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민간조사원의 교육기준이 상향된다면 교육과정이 어렵고 힘든 만큼 현장에 나가서도 사회적 인식과 개인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체계적인 정착과 안전한 실시를 위하여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대학기관에 의해 전문 교육을 담당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민간조사의 대학교육화에 대하여 김원중(2007)은 교육기관의 정립은 제도의 도입을 위한 필요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며, 체계화된 교육과 교육기관은 민간조사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3. 민간조사학과의 전망과 진로방향

민간조사학과의 전망과 진로방향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공인민간조사법안」의 통과 전과 통과 후가 달라질 것이라 하였다. <그림 3>은 민간조사학과의 전망과 취업방향을 범주화한 하위노드와 상위노드의 코딩 빈도와 속성의 관계를 구조화한 모형이며, 그 다음은 민간조사학과의 전망과 진로방향에 관하여 응답한 연구 참여자의 대표적인 하위노드 면담내용이다.



〈그림 3〉 민간조사학과와의 전망과 진로방향

- 민간조사학과를 개설해서 보험회사에 사고처리반, 사고조사반 그런대로 취업이 되면 기존의 애들보다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Y-13)
- 일단 법이 통과되면 완벽한 시나리오가 되겠죠. 민간경호회사처럼 민간조사도 법인으로만 들어지고 거기 취업하게 되는 것이 좋지요. (R-44)
- 현재로서는 (법안이 통과를 못해서) 그게 안 되니까 외국 민간조사회사 쪽으로 해서 영역을 넓혀나가야죠. (F-122)
- 아직 법안이 통과 안됐지만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취직에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법원 앞에 민간조사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지사 개념으로 몇 개를 두고 있는데 그런 테를 뚫고 가서 미리 자리를 잡으면 좋지요 페이도 쉐고..... (M-28)
- 민간조사학과라는 걸 개설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기존의 경호학과보다도 진로방향이 넓어지게 되겠죠. (H-43)
- 학과개설을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일단 지금으로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전망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I-95)
- 민간조사학과 나와도 현재 시큐리티 쪽으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죠. (H-12)
- 경호랑 접목을 시켜서 경비지도사 자격증도 취득을 하게끔 그렇게 커리큘럼을 짜줘야 되요 그렇게 하면 애들이 좀 더 취업에 도움이 되고 전망이 있지 않을까요. (J-89)

이처럼 민간조사학과 개설의 진로방향은 법안의 마련 전과 마련 후로 나누어졌다.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이미 민간조사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법안의 통과와 관계없이 취업의 방향이 형성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의 민간경호와 마찬가지로 정식법인업체의 활성화로 인해서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민간조사학과의 전망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내다보았으며 경호와 접목을 시켜서 함께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결국 민간조사학과 졸업생의 전망과 취업방향은 국제화시대에 세계적인 흐름과 다양한 치안 서비스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런 시장의 형성은 우리 민간조사시장의 질적 수준향상과 국가치안능력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우리 치안환경에 적합한 민간조사의 정착을 위하여 민간조사학과의 개설의 필요성과 그 전망에 대하여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현재의 민간조사관련 업체들의 난립과 앞으로 시작되는 합법적인 민간조사시장의 정착을 위해서는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민간조사학과를 개설하여 민간조사원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조사의 필요성은 국가치안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의 중요한 형사사건이 아닐 경우 민원인의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과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의 신분으로 민사관련 민원인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도 민간조사가 필요한 주요 원인들이었다.

둘째, 민간조사학과 개설의 필요성은 민간조사원을 교육하는 전문교육기관의 부재와 경찰 또는 의뢰인과의 신뢰성 증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은 전문교육기관의 부재는 민간조사원의 사회적 인식과 처우와 같은 것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또 민간조사원으로 활동하려면 많은 전문지식을 알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전문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학에서 전공으로 공부를 한다면 업무에 대한 사명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하였다. 이외에도 민간조사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민간조사현장에 나오게 된다면 민간조사업체에

의뢰하는 의뢰자뿐만 아니라 협력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는 경찰로부터도 더 많은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셋째, 민간조사학과 개설의 전망과 취업방향은 법안의 마련 전과 마련 후로 나뉘어졌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미 민간조사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만 「공인민간조사법안」이 통과되면 현재의 경비법인과 같이 많은 합법적 민간조사법인이 만들어져 더욱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체로 민간조사학과에의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내다보았으며 경호와 접목을 시켜서 함께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현재 민간조사업은 이미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현실과 사회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은 활동영역의 축소를 우려하는 변호사회 등 이익단체의 반발과 주무관청을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기관들의 대립으로 인해 번번이 무산되었다. 다만, 다행스러운 점은 제도 도입을 위한 지난 10여 년간의 논의를 통해, 이제 우리사회에서도 민간조사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민간조사제도가 공경찰 활동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사회에서도 민간조사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하여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아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향후 이 연구에서 분석한 민간조사의 대학 교과과정 포함에 대한 논의도 보다 세밀한 주제로 심도 있게 연구되어 앞으로 각 대학에 민간조사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나 교육과정의 확대포함 시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조사학과에의 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적 연구의 방법으로 민간조사의 필요성과 민간조사학과 개설의 필요성 및 민간조사학과에의 전망에 대하여 탐색적으로 접근하여 민간조사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질적 연구의 특성상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도 지닌다. 그러므로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원의 교육과 관련하여 양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확인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영숙 (2006). 일본탐정업계의 실태와 탐정업법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8, 327-357.
- 경찰청 (2010).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 김영천 (2007).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문음사.
- 김원중 (2007). 민간조사제도 도입 및 역할에 관한 검토. **법학논집**, 29, 199-221.
- 이상원 (2007). 한국 민간조사제도의 발전방향: 시험제도와 교육훈련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4, 337-365.
- 이상원 (2008). 민간조사(탐정)제도의 도입방향: 경비업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7, 235-253.
- 이승주 (2006). 한국형 탐정제도 도입에 따른 규범학적 고찰. **한국민간경비학회보**, 8, 93-118.
- 이승철 (2008). 민간조사업법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7, 255-276.
- 이인기 (2008). 공인탐정,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 및 추진상황. **수사연구**, 301, 서울: 수사연구사.
- 이영래 (2009). 선진외국 민간조사제도의 시사점: 국내 도입 및 선진국 운용사례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지**, 6(1), 31-52.
- 이주락 (2011).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필요성. **시큐리티 월드**, 6월호, 19. 서울: 인포터.
- 유재두 (2007). 민간조사원 자격요건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9, 209-229.
- 박종원 (2009). **현장 연구자를 위한 질적데이터의 과학적 관리와 분석 NVivo 8 프로그램의 활용**. 서울: 형설출판사.
- 정일석, 박준석, 오세광 (2008). 바람직한 민간조사제도 도입 방안: 경비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0(4), 271-299.
- 전대양 (2006). 민간조사업 법안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이상배 최재천 안을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8, 33-64.
- 조현빈 (2006). 주요국가의 공인탐정 현황 및 정책점 시사점. **한국민간경비학회보**, 8, 271-296.
- 장석현, 송병호 (2008). 민간조사업 도입상의 쟁점분석. **한국공인행정학회보**, 33, 335-365.

정일석, 박지영 (2009). 민간조사업 관리감독 기관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1, 135-154.

최명민, 현진희 (2005). 의료사회복지사자의 소진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8(1), 1-38.

황정익 (2005). 공인조사(공인탐정)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 외국문헌

McCrie, R D. (2001), *Security Operation Management*, MA: Butterworth Heinemann.

Padgett, D. K.(1998). *Qualitative Method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New York: Sage.

【Abstract】

A qualitative Research on Establishment of Department of Private Investigation and Its Future Direction

Jo, Sung-Gu · Lee, Ju-Lak

There are various discussions about introducing private investigation in South Korea these days, and training private investigators is one of the main topics. Training private investigators, unlike other training, is required to instill expertise and ethical quality into the trainees since the major task of the investigators includes protecting the lives of the citizens as well as their properties. Therefore, many agree to the idea that systematic educational programs need to be organized to produce private investigators with expertness and morality. In this study, we explored the opinions of those who are concerned with this issue of establishing private investigation in the university education and analyzed the data by using the NVivo 2 program.

The result revealed that the reasons that people supported the idea of launching private investigator service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is lack of manpower to maintain peace and public order in the country. Second, the police does not intervene actively and help harmed victims unless it is a consequential incident. Third, in position to wield public power, police officers cannot get involved in civil affairs. Also, absence of an academic institution to educate private investigators and lack of the police and clients' trust in private investigation were the two biggest reasons that people approved the proposal to introduce department of private investigation in universities. The interviewees of the study believed the outlook and future direction for private investigation would change depending on the status of the licensed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bill. Before the bill passes, they thought that the work

of private investigators will be performed by insurance companies, foreign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es, domestic consulting firms, and security providers which supply similar services. On the other hand, after the bill passes, they believed that numerous private investigator corporations resembling existing security corporations will be founded in addition to the current market, and that private investigation in the academic field will also be vitalized.

Key Words : Private Investigation, Need for Private Investigation, Establishment of Department of Private Investigation in Universities, Outlook for Department of Private Investigation, Qualitative Data Analysis